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보험금액 등 고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계약금액, 환불지연시 지연이자율 및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를 2002. 9. 18 확정하였고, 동 고시사항은 공포(2002. 9. 26)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상품 구입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또는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상품대금을 판매업자로부터 환불받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상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먼저, 다단계판매업자(의무가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법정 환불금액의 90%(미성년자 또는 60세이상인 경우는 100%) 이상을 보상받게 되고, 다단계판매원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법정 환불금액의 70%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신규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현재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사업자는 2003. 1. 1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업자 등도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표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들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피보험자(구매자)가 고의·과실이 있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관에 의해 보험업자는 보험계약금액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3개 이상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자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도산·폐업 등의 경우에도 전자결제수단(전자화폐) 소지자의 피해를 보상토록 하고 있다(10. 24부터 시행).

또한, 판매업자가 현금금 지급을 3영업일 이상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율을 연리 24%로 정함으로써 환불지연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를 고시하고 이를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여,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고시」의 주요내용은 본지의 '부록(58면 이하)'을 참고 바람.

공동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적발 및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

로 제공한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고발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동

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2002. 9. 5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담합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97년부터 과징금 등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동 감면제도에 의하여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감면한 실적은 미흡하여 감면제도의 활성화 및 담합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면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동 제도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위의 조사개시(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 현장조사 등) 전후를 기준으로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를 구분하고, 둘째,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였는지의 여부는 합의서, 각서, 확인서 등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동행위

참여자 중 과반수를 초과하는 사업자들이 동시 또는 연명으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제2항제3호(50%미만)를 적용하며, 셋째, 증거제출시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증거는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토록 하고, 증거를 제공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이를 지체없이 사건부속문서 등으로 접수하도록 한다.

넷째, 감면제도의 활성화 및 조기정착을 위해 과징금 감면폭은 법 및 시행령이 허용하는 최대감면폭을 적용하고, 감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다섯째, 신고 및 조사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 등의 신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한다.

※ 「공동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 및 「감면제도 관련 규정」은 본지의 '부록(59면 이하)'을 참고 바람.

원사업자 서면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 서면확인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8천개 대형업체(원사업자) 서면조사에 이어, 이들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있는 2만 2천개 수급사업자(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해 서면확인조사를 한 결과, 원사업자 서면조사 결과와 같이 현금성 결제비율의 증가, 어음결제기간의 단축, 대금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수의 감소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수급사업자 중 서면조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2000년 조사시 32.0%에서 2002년 58.5%로 증가하여 수급사업자의 조사참여의식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고, 수

급사업자 조사기간중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 등을 자율시정한 업체도 2000년 조사시 52개에서 2002년 447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 원·수급사업자 조사결과 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4,634개 업체(제조 3,581개, 건설 1,053개)에 대해서는 대금관련 2,167개 법 위반혐의 업체(제조 1,542개, 건설 625개)는 9월말까지 자진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하였으며, 비대금관련 2,467개 법 위반혐의 업체(제조 2,039개, 건설 428개)는 자진시정

토록 하고, 향후 법 준수를 촉구하였고, 원사업자 조사에서는 법 위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수급사업자 조사결과 대금관련 법 위반혐의가 현저히 나타난 업체에 대해서는 10월중 현장조사를 실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조사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

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고, 아울러, 하도급거래가 가장 많은 자동차업종에 대해서는 금년중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동차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학수속 대행업무에 있어서 유학원과 의뢰인 모두에게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을 2002. 8. 30. 승인하였다.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유학수속대행비용 및 대행업무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유학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을 둘러싼 소비자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계약의 중도해지시 업무처리의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수속대행료에서 일정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환급하도록 하고(제5조제2항), 유학원이 유학수속과 관련하여 수령하였거나 작성한 서

류 일체를 의뢰인에게 반환토록 하며(제5조제3항), 셋째, 유학원이 선관주의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경우와 업무처리의 오류로 의뢰인이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대행수수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제4조제2항), 넷째, 유학원의 업무처리 오류로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교 이내에서 추가수속비 없이 유학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조제1항).

『이사회물 표준약관』 승인

공정위는 이사관련 소비자에게 이삿짐의 훼손·파손·분실 및 이에 따른 피해보상 거절·회피 내지 일부보상, 사업자가 이사회물의 인수 등을 일방적으로 지연, 이사업체의 추가요금 강요, 계약과 다른 서비스 제공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사회물 표준약관”을 2002. 9. 4. 승인하였다.

현행 개별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은 이사회물의 멸실·훼손·연착에 대한 피해보상 조항이 없

거나 이사 당일 해제통보조차 아니한 경우에도 보상조항이 없고,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사유(면책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입증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책임소멸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피해·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승인된 동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서의 표준화 및 계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와 계약금의 한도, 운임 및 부대요금 청구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사화물의 멸실 등의 경우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며, 피해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의 손해배상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이사화물 차량 이외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등의 요건·효과를 구체화시켰고, 사업자의 배상책임의 소멸사유 및 시효기간을 고객 보호의 차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규정(제18조 제1항~제3항)하고 있다.

상반기 현금성 결제 58.9조원, 어음결제 앞질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적극 유도해온 결과, 2002년 상반기 중 현금성 결제액은 58조 8,501억원으로 2001년 하반기 39조 3,035억원 대비 49.7% 증가하여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현금성 결제액 중 기업구매전용카드 39조 7,872억원(67.6%), 기업구매자금대출 18조 9,062억원

(32.1%), 외상매출담보대출이 1,567억원(0.3%)을 차지하였고, 현금성 결제의 수혜업체수도 411,517개로 2001년 하반기 284,911개 대비 44.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소기업의 거래대금에 대한 현금성 결제가 어음결제를 상회하였다.

이와 같이, 현금성 결제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

〈현금성 결제실적〉

(억원, %)

	2001년도		2002년도	증가율 (B-A)/A
	상반기	하반기(A)	상반기(B)	
기업구매전용카드	135,778	238,976	397,872	66.5
기업구매자금대출	104,648	152,861	189,062	23.7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1,198	1,567	30.8
합 계	240,426	393,035	588,501	49.7

*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임

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하도급법상 벌점 감점, 과징금 감면, 현장직권조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가 실효성을 보이고 있는데 기인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어음대체 결제수단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성 결제하는 업체

에 대하여 다음 연도 서면실태조사 자체를 면제하고 우수업체를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재정경제부와 협의, 금년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현금성 결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제도의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참 고

1. 기업구매전용카드 (1999. 11. 1 도입)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카드수수료는 납품대금에서 공제)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

2.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2000. 5. 22 도입)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결제하는 방식

3.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2001. 2. 12 도입)

납품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납품대금을 대출받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결제방식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은행이 납품기업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일반적이거나, 예외적으로 지급능력이 우수한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납품기업과 상환청구권 없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거래은행이 납품기업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어 연쇄부도가 방지되므로 현금성 결제에 포함됨

4. 현금성 결제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매기업(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상대로 결제한 금액에 한정)에 대해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한도내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결제액 +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 등 결제액 +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어음발행액) × 0.5%를 세액공제(2000. 10. 21 시행)
- 하도급대금 중 현금, 기업구매카드, 구매자금용,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 등 현금성 결제액이 60%~80%미만은 하도급벌점 1점 감점, 80%이상은 2점 감점(2000. 4. 1 시행)
- 하도급법 위반업체가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80%이상인 경우 산정된 과징금의 50%를 감면(2001. 5. 17 시행)
-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하도급거래 현장직권조사를 면제(2002. 1. 1 시행)
- 한국은행은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하여 총액대출한도의 확대를 통해 연리 2.5%로 자금지원

공정위, 『특수거래보호과』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9. 14.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을 통하여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의 집행을 전담할 『특수거래보호과』를 신설하였다.

특수거래보호과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 등 그 동안 비점포 판매방식의 거래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취약했던 사업분야에서 빈발해 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수거래보호과』 신설시 강화되는 소비자보호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방판법은 영업정지, 과태료(시·도지사 관할) 및 형사벌(경찰관서)이 전부였으나, 새로운 법에 의하면, 현행의 제재수단에 추가하여, 시정 권고, 시정조치명령, 과징금이 추가되고 분쟁조정

의뢰 등이 신설되며,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차 시정방안을 정하여 권고하고, 수락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명령으로서 법 위반행위의 중지, 의무이행,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하도록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기타 신설된 업무분야로는 거래분야별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법 제33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법 제34조, 제35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법 제37조) 및 사건처리에 있어 공정거래법의 사건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평가·인증사업에 대한 공정화(법 제39조), 사업자단체의 등록(법 제47조), 소비자단체 등의 “침해정지요청”에 대한 심사(법 제24조) 등이다.

2002. 8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

공정위는 2002년 8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4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2년 8월중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는 363개에서 365개로 2개사가 증가하였고,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제외)의 계열회사수는 360개사에서 2002. 9. 2. 현재 364개로 4개사가 증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수는 2002. 8. 1. 현재 723개에서(신규편입 7개사, 계열제외 1개사) 2002. 9. 2. 현재 729개로 6개사가 증가하였다.

2002. 8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2. 8. 1.	편 입			제 외						증감	2002. 9. 2.
		회사 설립	주식취득 및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계		
전 체	723	3	4	7	0	0	1	0	0	1	6	729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363	2	1	3	-	-	1	-	-	1	2	365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360	1	3	4	-	-	-	-	-	0	2	364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제외

2002. 8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7개사(주식취득 1, 회사설립 3, 기타 3)

□ 제외 : 1개사(청산)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업종명	사 유	회사명	업종명	사 유
엘 지	(주)엘지 생명과학	유기, 무기 화학공업 제품 제조판매업	회사설립	-	-	-
현 대 자동차	(주)본택전자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 타	-	-	-
동 부	공주환경(주)	하수처리장 건설·관리·운영	회사설립	-	-	-
현 대 백화점	(주)에이치디 에스아이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	-	-
태 광 산 업	(주)신갈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주식취득	-	-	-
	(주)수원네트워크	"	기 타			
대 성	(주)바이넥스트 하이테크	창업지원 투자업	"	-	-	-
두 산	-	-	-	한국중공업(주)	국내외 무역업	청 산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 엘지, 현대자동차, 동부, 두산

공정위 인사동향

서기관(과장급) 전보

특수거래보호과장

인사발령일 : 2002. 9. 14.

이성구(전자거래보호과장)

서기관급 전보

경쟁촉진과

재정경제부

심판관리2담당관실

공정거래위원회

인사발령일 : 2002. 9. 6.

최무진(재정경제부)

이현철(유통거래과)

엄기섭(경쟁촉진과)

조창영(심판관리2담당관실)

서기관 승진

공보관실

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2담당관실

조사국 조사1과

인사발령일 : 2002. 9. 16.

장상기

이준길

박종성

사무관급 전보

제도개선과

국제협력과

인사발령일 : 2002. 8. 21.

최영근(국제협력과)

신정은(특허청)

* ()은 前補職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작성

본 협회에서는 각 회원사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편람을 업종에 맞게 작성해 드리고 있으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작성 계획이 있으신 각 회원사는 상담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7·5·8·8·7·0~2 / FAX. 0·2·7·7·5·8·8·7·3